

인천광역시공사 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9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가.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공사·공단에 설치됨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함.

□ 참고자료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□ 「지방공기업법」</p> <p>제58조 (임원의 임면 등)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 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에서 추천 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 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 정 2009.4.1></p> <p>⑥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></p> <p>□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</p> <p>제56조의3 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<개정 2009.9.21>)</p> <p>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 위원회"라 한다)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 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 <신설 2009.9.21>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